

업 무 수 행 기 준 규 정

(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

2001. 2. 8. 제정
2001. 12. 19. 개정
2004. 1. 6. 개정

목적

이 규정은 한국FPSB의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는 CFP자격인증자 및 AFPK자격인증자의 개인종합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종합재무설계(이하 “재무설계 또는 Financial Planning”이라 한다)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무설계 업무수행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배경

이 규정은 FPSB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FP표준위원회)와 FPSB Council(국제FPSB평의회)가 국제표준으로 채택을 권고하고 있는 미국 CFP-Board의 재무설계업무수행기준 (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정의 및 적용범위

각 업무수행기준은 재무설계 업무수행시 자격인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업무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자격인증자를 포함한 모든 재무설계 업무종사자가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며, 특히 자격인증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각 업무수행기준은 업무수행과정별로 업무수행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업무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FPSB가 업무수행과정별로 추가로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추가로 제정되는 업무수행기준은 시행일로부터 이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재 무 설 계 업 무 수 행 과 정

1. 고객과의 관계정립
2. 목표를 포함한 고객관련 자료수집
3.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4.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시 리 즈 별 업 무 수 행 기 준

- 100-1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 200-1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결정
- 200-2 계량정보 및 자료의 수집
- 300-1 고객관련 정보의 분석 및 평가
- 400-1 재무설계대안의 파악 및 평가

	400-2 재무설계제안서의 작성
	400-3 재무설계제안서의 제시
5.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500-1 실행책임에 대한 상호합의
	500-2 실행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선별
6. 재무설계 제안서의 모니터링	600-1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의 확정

- (주1) 재무설계업무의 수행과정은 Financial Planning Practice의 6가지 Process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무설계업무의 수행은 6단계 Process를 활용하여야 한다..
- (주2) AFPK 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업무 수행시 CFP자격인증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상담, 자료수집 및 재무상태분석등을 포함하는 1, 2, 3 단계의 업무수행과정에 한정되는 재무설계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주3) 보험, 증권, 부동산, 세무, 법률 등 한국FPSB가 계속교육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다른 특정부문의 전문자격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AFPK자격인증자는 해당 전문자격에 관한 법령과 해당 자격인증기관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특정부문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재무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AFPK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고객불만으로 인한 장래의 소송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CFP자격인증자의 지도와 감수를 받아 전문직업인으로서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기록으로 확보할 것을 한국FPSB는 권고한다.
- (주4) 보험, 증권, 부동산, 세무, 법률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인증자는 종합재무설계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해당분야를 담당할 수 있게 되며,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한국FPSB는 자격인증자의 다른 전문자격 취득을 권장하며 자격갱신기간 중의 자격취득에 대하여 계속교육학점으로 인정한다.
- (주5) CFP자격인증자는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부문설계와 수개 또는 전부문에 대한 종합재무설계업무를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CFP자격인증자 또는 다른 전문자격자와 함께 또는 자문을 받아 수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업무수행기준 100-1

고객과의 관계정립

2001. 2. 8. 제정

2001. 12. 29. 개정

업무수행범위의 결정

업무수행의 범위는 자격인증자와 고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따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은 고객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필수 요소이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공할 서비스 내역
- 보수내역의 결정
- 고객과 자격인증자의 책임 한계
- 계약기간의 설정
- 계약범위 설정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의 범위는 하나 또는 복수의 업무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과 자격인증자가 합의할 경우 범위를 특정활동에 한정할 수 있다.

업무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를 통하여 업무수행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기준전체와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윤리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4조(공정성의 원칙)과 공정성 관련규칙 제402조 및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과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2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 제4조 (공정성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나, 윤리규정의 공정성 관련규칙 제402조는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의 상충과 보수의 근거 등… 주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7조 (근면봉사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2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검토하여 “고객의 욕구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영향

업무수행의 범위가 자격인증자와 고객간의 상호이해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때 고객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도움이 된다. 업무수행의 범위가 명확할 경우 고객의 기대치 충족의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재무설계 전문직에 대한 영향

고객의 만족은 업무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고객이 사전에 업무처리과정이 현실적이고 명백하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면 고객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재무설계 업무전문가에 대한 영향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업무수행의 범위는 업무처리과정의 기본 지침이 되며, 자격인증자와 고객이 합의한 업무분야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며 긍정적 결론달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업무수행기준 200-1

고객관련 자료수집

2001. 2. 8. 제정

2001. 12. 19. 개정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 니즈(needs) 및 우선순위의 결정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는 업무수행범위와 제공될 서비스에 부합되도록 자격인증자와 고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고객의 재무상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는 해당고객의 가치관, 취향, 기대치 및 시간적 제약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가치관, 취향, 기대치 및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야 한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은 고객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필수요소이다.

목표와 목적은 업무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치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인증자는 고객과 함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목표설정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목표와 목적이 비현실적인 때에는 고객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상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고객의 가치관, 취향 및 기대치의 평가와 함께 고객의 시간적 제약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고객의 솔직성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기준전체와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윤리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과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 제702조 및 제703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02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검토하여 고객의 욕구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703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영향

업무수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고객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도움이 된다. 이 기준의 적용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의 목표와 목적 달성의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무설계 전문직에 대한 영향

이 기준의 적용은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가 업무수행과정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의 준수로 더욱 많은 일반대중이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이 될 것이다.

재무설계 업무전문가에 대한 영향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는 재무설계 업무처리 과정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할 특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자격인증자의 적절하고 타당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된다.

업무수행기준 200-2

고객관련 자료수집

2001. 2. 8. 제정

2001. 12. 29. 개정

계량정보 및 자료의 수집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의 범위와 제공될 서비스를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적절한 계량 정보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여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자격인증자는 제안서 작성 전에 고객과의 계약형태 및 범위에 따라 필요한 계량적 정보와 자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자산, 부채 및 일신상의 사정에 대한 계량 정보와 자료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확보하거나 또는 면담, 설문서, 고객의 기록과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자격인증자는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과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자료가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경우에는 검토결과와 제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자격인증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자격인증자는 (1)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사항만으로 업무수행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2)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자격인증자가 업무수행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내용과 함께 이러한 제한이 검토결과와 제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기준전체와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윤리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과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 제702조 및 제703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02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검토하여 고객의 욕구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703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영향

적절하고 충분한 계량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서가 작성되어야 고객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도움이 된다. 이 기준의 적용은 고객의 목표와 목적달성의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재무설계 전문직에 대한 영향

재무설계 업무처리 과정상 충분하고 적절한 계량정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의 준수로 더욱 많은 일반대중이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이 될 것이다.

재무설계 업무전문가에 대한 영향

충분하고 적절한 계량정보와 자료는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적절한 제안서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업무수행기준 300-1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2001. 2. 8. 제정

2001. 2. 19. 개정

고객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평가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고객의 현행 가용 자원 및 현 자산운용 방식을 따를 경우 고객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자격인증자는 제안서 작성전에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 평가하고 현재의 자금운용 방식을 지속할 경우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인증자는 고객과 상호 합의된 가정과 함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가정과 일반 경제적 가정 등 기타 타당한 가정을 고려하여 이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가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객 신상에 대한 가정: 은퇴 연령, 기대 수명, 필요한 수입, 위험요소, 시간적 제약 및 기타 특수한 욕구 등.

일반 경제에 대한 가정: 인플레이션율, 세율 및 투자 수익 등.

분석 및 평가는 고객의 재무 상태 및 현 투자 방식의 강점과 약점 파악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 활동이다. 이와 같은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업무수행 범위를 수정하거나 추가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윤리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2조(객관성의 원칙)과 객관성 관련규칙 제201조 및 제202조와 제3조(능력개발의 원칙)과 능력개발 관련규칙 제302조 및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과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 제2조(객관성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건실한 전문가로서의 분별력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객관성 관련규칙 제2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 수행시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2조는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3조(능력개발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능력개발 관련규칙 제302조는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서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해당 고객을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시의 적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

자격인증자가 수행하는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 활동으로 특정 재무설계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가 향상되었을 때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된다. 이 기준은 고객의 목표와 목적 달성의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무설계 전문직에 대한 영향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는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게 된다.

재무설계 업무전문가에 대한 영향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회원은 고객의 재무목표, 니즈 및 선결과제에 적합한 제안을 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업무수행기준 400-1

재무설계 제안서 작성 및 제시

2001. 12. 19. 제정

재무설계 대안의 파악 및 평가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수행시 고객의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여러가지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고객의 현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나서 (업무기준 300-1),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기 이전에 (업무기준 400-2 및 400-3), 자격인증자는 대안을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충족에 대한 각 대안의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시에는 여러가지 가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연구 조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객의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한가지 혹은 복수의 대안을 도출하게 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대안을 전혀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에 관한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이나 규정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능력의 수준을 고려 하여야 한다.

고객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한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다. 전문가적 판단에는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한 자격인증자가 도출한 대안은 다른 자격인증자나 관련전문가의 대안과 다를 수 있다.

윤리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2조(객관성의 원칙)과 객관성 관련규칙 제201조 및 제202조, 제3조(능력개발의 원칙)과 능력개발 관련규칙 제302조,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

과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608조, 제7조(근면 봉사의 원칙)과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 및 제703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 제2조(객관성의 원칙)은“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건실한 전문가로서의 분별력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객관성 관련규칙 제2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02조는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3조(능력개발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능력개발 관련규칙 제302조는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서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해당 고객을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 업무수행 등 다른 자격인증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608조는 “자격인증자는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그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03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업무수행시 선택된 대안과 고객의 현행 자산운용 방식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대안 및 고객의 현행 자산운용 방식을 파악하고 평가한 후,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재무목표, 욕구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제안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일괄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행위의 집합이 될 수도 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 하여야 한다.

-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업무수행의 범위
-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고객의 재무상의 목표, 욕구 및 우선순위
- 고객에 의해 제공된 계량 정보
- 고객 신상 및 일반 경제에 대한 가정
- 고객의 현 재무상태에 대한 회원의 분석 및 평가
- 자격인증자가 선택한 대안

제안서는 현행 자산운용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현행방식에서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하거나 또는 개괄적인 방향만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목표 수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한 자격인증자가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이 다른 자격인증자나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과 서로 다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제안서는 나름대로 각각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윤리규정과 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2조(객관성의 원칙)과 객관성 관련규칙 제201조 및 202조와 제3조(능력개발의 원칙)과 능력개발 관련규칙 제302조,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과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608조 및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과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 제2조(객관성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건실한 전문가로서의 분별력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객관성 관련규칙 제2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 수행 시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2조는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3조(능력개발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능력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능력개발 관련규칙 제302조는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서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해당 고객을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은 “회원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 업무 수행 등 다른 자격인증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 608조는 “자격인증자는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그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 규칙 제7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시의 적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03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04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제안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설계 제안서의 제시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제안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제안서를 제시할 때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자신의 현 재무상황, 제안서 내용과 함께, 고객 자신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제안서의 효과를 이해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의견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인증자는 고객이 제안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소를 설명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 요소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

- 고객 신상 및 일반 경제에 대한 가정
- 제안내용의 상호 의존성
- 유리한 점 및 불리한 점
- 위험요소
- 시간적 제약

자격인증자는 제안서의 내용이 고객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지라도, 개인 신상 및 일반 경제의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의 변동에는 입법사항, 가족 상황, 직업, 투자수익, 건강상태 등 여러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만일 아직도 통보되지 않은 이해상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해상충의 내용과 함께 제안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자격인증자는 제안서의 제출과 설명이라는 제시과정을 통하여 해당 제안서의 내용이 고객의 기대를 충족 시키는지의 여부, 고객이 제안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 및 제안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윤리규정과 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1조(성실성의 원칙)과 성실성 관련규칙 제102조 및 제2조(객관성의 원칙)과 객관성 관련규칙 제201조 및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과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607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 제1조(성실성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항상 고객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성실성 관련규칙 제102조는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허위, 사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2조(객관성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건실한 전문가로서의 분별력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객관성 관련규칙 제201조는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은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업무수행 등 다른 회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 607조는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 FPSB Korea 표장 또는 자격인증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

전략적이고 객관적인 제안서가 작성되고 고객 개개인의 재무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될 때 고객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된다.

재무설계 전문직에 대한 영향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제안서 작성 및 제시 과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재무설계 전문직을 발전시킨다. 해당 고객에게 적절한 전략과 맞춤형 제안의 개발로 재무설계 과정에 대한 객관성 및 가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게 되며,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은 이 업무기준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게 될 것이다.

재무설계 업무 전문가에 대한 영향

고객에게 적절한 맞춤형 전략 및 제안 사항은 의미 있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고객이 제안서를 받아들이고 제안 내용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실행책임에 대한 상호합의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제안서의 실행 책임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고객은 자격인증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수락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실행 책임을 본인이 직접 지든가 또는 위임하여야 한다.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자격인증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격인증자와 고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업무수행 범위는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자격인증자의 책임은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제안서 실행에 필요한 활동 내역
- 고객과 자격인증자간의 활동의 분담
- 다른 전문가에 대한 소개
- 다른 전문가와의 협력
- 정보 공유의 허용범위
-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선별 및 확보

만약 아직 통보되지 않은 이해상충, 보수의 근거 또는 다른 관련전문가와의 주요한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이해상충, 근거 또는 실질관계는 이 단계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관련 전문가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자격인증자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고객이 단지 제안서 실행만을 자격인증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업무수행의 범위는 업무기준 100-1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의 범위에는 자격인증자가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분석자료 또는 제안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윤리규정과 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3조(능력개발의 원칙)과 능력개발 관련규칙 제302조, 제4조(공정성의 원칙)과 공정성 관련규칙 제402 및 제404조,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과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606조 및 제608조, 그리고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과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 제3조(능력개발의 원칙)은 "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능력개발 관련규칙 제302조는 "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서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해당 고객을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4조(공정성의 원칙)은 " 자격인증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공정성 관련규칙 제402조는 "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의 상충과 보수의 근거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04조는 " 고객과의 계약체결 후에 이해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고객이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은 "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 업무수행 등 다른 자격인증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606조는 "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관계당국의 규정 및 지침, 2) 한국FPSB의 제반 규정 및 방침 "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08조는 " 자격인증자는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그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는 "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시의 적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행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선별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는데 있어 양적 질적 정보를 감안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자격인증자는 선별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고객에게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전문가적 판단에는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한 자격인증자가 선별한 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자격인증자 또는 관련전문가가 선별한 내용과 다를 수도 있다.

자격인증자는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을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윤리규정과과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과 제2조(객관성의 원칙)과 객관성 관련규칙 제202조, 제4조 (공정성의 원칙)과 공정성 관련규칙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8조, 제409조 및 제416조,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과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606조, 그리고 제7조 (근면 봉사의 원칙)과 근면 봉사 관련규칙 제701조, 제703조 및 제704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 제2조(객관성의 원칙)은 "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건실한 전문가로서의 분별력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객관성 관련규칙 제202조는 "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4조(공정성의 원칙)은 " 자격인증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공정성 관련규칙 제402조는 "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의 상충과 보수의 근거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03조는 "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자격인증자의 객관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04조는 " 고객과의 계약체결 후에 이해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고객이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08조는 " 자격인증자가 고객의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수행관련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09조는 " 자격인증자가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체, 다른 자격인증자의 소속직원 또는 대리인일 경우에도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합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16조는 " 자격인증자가 고객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계약의 위험도, 이해상충 및 공정한 거래에 필요한 다른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6조(전문가정신의 원칙)은 " 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업무수행 등 다른 자격인증자와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전문가정신 관련규칙 제606조는 "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관계당국의 규정 및 지침, 2) 한국FPSB의 제반 규정 및 방침 " 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7조(근면봉사의 원칙)은 "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701조는 "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03조는 "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04조는 "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제안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영향

제안서의 실행을 위하여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가 선별될 때, 고객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고객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된다.

재무설계 전문직에 대한 영향

고객을 위하여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안서를 실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격인증자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재무설계 업무전문가에 대한 영향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격인증자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의 확정

자격인증자와 고객은 상호 협의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해설

이 기준의 목적은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자격인증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경우 고객의 기대치는 자격인증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서비스의 수준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모니터링 서비스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격인증자는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대상과 모니터링의 빈도 및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고객은 자격인증자가 제공할 모니터링 서비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과정의 일부 또는 전 단계를 다시 시작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견 될 수도 있다. 현행의 업무수행 범위도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윤리규정과과의 관계

이 기준은 윤리규정 제 7 조(근면봉사의 원칙)과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 702 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리규정 제 7 조(근면봉사의 원칙)은 "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의 근면봉사 관련규칙 제 702 조는 "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검토하여 1) 고객의 욕구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2)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영향

제안서 모니터링 업무의 책임과 범위에 대하여 자격인증자와 고객이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이해할 경우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된다.

재무설계 전문직에 대한 영향

고객의 만족은 업무확대에 큰 도움을 준다.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고 분명할 때 고객의 만족도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기준은 재무설계 업무가 하나의 독립적인 활동이기 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을 증진시킨다.

재무설계 업무전문가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책임에 대하여 자격인증자와 고객이 상호 합의하여 확정할 경우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자격인증자의 책임한계도 분명하게 된다.